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 : 윤준병ㆍ이성윤ㆍ박민규

이상식 • 복기왕 • 민형배

서영교 · 허종식 · 이해식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 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·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(결과 공표는 제외한다)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(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·제8항·제10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・② (생	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		
	에 관한 업무(결과 공표는 제		
	외한다)의 일부를 대통령령으		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		
	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		
	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제61조(보고와 업무 검사 등) ①	제61조(보고와 업무 검사 등) ①		
• 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	
	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		
	<u>무(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·</u>		
	제8항·제10항에 관한 사항에		
	한정한다)의 일부를 대통령령		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		
	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		
	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